아름다운 변화 양주

【검토보고서】

2018.11.15(목)
제299회 임시회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체육청소년과장)

나. 제출일 : 2018년 10월 31일

2. 제안이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별표 1]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 (양주실내체육관, 옥정체육공원) 및 기존 시설명칭 변경 (장흥축구장 → 장흥생활체육공원) (안 제3조)

나. [별표 2] 신규 체육시설인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신설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입법예고 : 2018. 10. 2. ~ 10. 21.(20일간)

다. 부서협의

1) 협의기간 : 2018. 9. 12. ~ 9. 28. (16일간)

2)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 규제심사 : 심의대상 아님

5. 검토의견

가. 개정 개요

○ 본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

○ 개정안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시설의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 :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나. 개정 내용

1) 별표 1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 및 명칭 변경

○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추가 (양주실내체육관, 옥정체육공원) 및 기존 시설명칭 변경 (장흥축구장 → 장흥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제3조 제1항 관련) 현행규정]

연번	시설명	소재지(대표지번)	비고
1	고덕체육공원	양주시 고덕로 187-55	
2	덕정체육돔구장	양주시 화합로 1457-64	
3	신천체육공원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22-2	
4	장흥축구장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479-5	
5	고읍축구장	양주시 광사동 714	
6	광적생활체육공원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 303	
7	백석생활체육공원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239-3	
8	삼숭생활체육공원	양주시 삼숭동 625-5	
9	양주국민체육센터	양주시 고읍남로 172	

[사용료 부과대상 체육시설 (제3조 제1항 관련) 개정안]

연번	시설명	소재지(대표지번)	비고
1	고덕체육공원	양주시 고덕로 187-55(덕계동)	
2	덕정체육돔구장	양주시 화합로 1457-188(고암동)	
3	신천체육공원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422-2	
4	**장흥생활체육공원**	**양주시 장흥면 일영로501번길 100-16**	**변경**
5	고읍축구장	양주시 광사동 714	
6	광적생활체육공원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18번길 303	
7	백석생활체육공원	양주시 백석읍 백은로 185	
8	삼숭생활체육공원	양주시 삼숭동 625-5	
9	양주국민체육센터	양주시 고읍남로 172(광사동)	
10	**양주실내체육관**	**양주시 삼숭로129번길 139-14(삼숭동)**	**추가**
11	**옥정체육공원**	**양주시 회천로 281(고암동)**	**추가**

❍ 체육시설 현황

(2018. 10. 24. 기준)

연번	시설명	준공일/위탁일	위치	부지면적	주요시설
1	고덕생활 체육공원	'04.09.20 /'17.05.01	고덕로 187-55	19,771㎡	인조잔디구장 1면(102x66m) 풋살구장 1면, 농구장 1면 육상트랙 4레인, 관람석 800석
2	고읍 축구장	'09.09.30 /'17.05.01	광사동 178-25	3,666㎡	인조잔디축구장 1면(77x44m)
3	광적생활 체육공원	11.6월 /'17.05.01	광적면 부흥로 618번길303	104,443㎡	인조잔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족구장 3면, 게이트볼장 1면, 놀이터
4	백석생활 체육공원	'13.04.20 /'17.05.01	백석읍 오산리 239-3	74,115㎡	인조잔디축구장 1면(105x68m) 야구장 1면, 리틀야구장 1면 육상트랙 6레인, 테니스장 실내 4면, 실외 5면
5	삼숭생활 체육공원	11.10.26 /'17.05.01	삼숭동 625-5	5,190㎡	테니스장 4면, 족구장 1면
6	신천생활 체육공원	'06.09.17 /'17.05.01	은현면 강변서로 303	5,190㎡	인조잔디 축구장 1면(102x66m) 테니스장 4면, 농구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 1면
7	장흥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08.11.26/'09.4월 (야구장) '16.8월/'17.05.01	장흥면 삼상리 477-7	31,237㎡	인조잔디 축구장 1면(105x68m) 인조잔디 야구장 1면(105x91m)
8	덕정 배드민턴 돔구장	'03.12.14 /'17.05.01	화합로 1457-64	5,760㎡	돔구장 배드민턴 5면 실외 다목적구장(농구장) 1면
9	양주 국민체육 센터	'13.10. /'17.05.01	고읍남로 172	3,689.067㎡	수영장 6레인, 헬스장(130㎡) 다목적체육관(800㎡), 다목적실
10	옥정 체육공원	'17.10. /'18.07.01	고암동 294-1	52,816㎡	인조잔디축구장 1면(105*68m) 육상트랙(400m*8트랙) 농구장 2면, 실외배드민턴장 3면
11	양주 실내체육관	'18.08.26 / 18.10.01	삼숭로129번길 139-14	2,138.25㎡	배드민턴장 8면, 탁구대 8면 관람석 : 220석

2) 별표 2 사용료 및 이용료 신설

○ 신규 체육시설인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신설

[사용료 (제11조 제1항 관련) 개정안]

(전용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체 육 경 기 (2시간 기준)				체육경기외 행사 (4시간 기준)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축 구 장	30,000	45,000	45,000	60,000	150,000	225,000	225,000	337,000
야 구 장	40,000	60,000	60,000	80,000	150,000	225,000	225,000	337,000
리 틀 야 구 장	20,000	30,000	30,000	40,000	75,000	112,500	112,500	168,500
테 니 스 장(1면)	15,000	18,000	18,000	27,000	-	-	-	-
배드민턴장(1면)	4,000	6,000	6,000	8,000	8,000	10,000	10,000	12,000
탁 구 장(1면) (신설)	4,000	6,000	6,000	8,000	-	-	-	-
수 영 장	200,000	300,000	300,000	450,000	800,000	1,200,000	1,200,000	1,800,000
다 목 적 체 육 관	30,000	45,000	45,000	67,500	220,000	330,000	330,000	495,000
육 상 트 랙	10,000	15,000	20,000	30,000	80,000	120,000	120,000	160,000

(공통사항)

○ 공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 전용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 징수한다.

○ 시설사용자중 관외거주자가 2분에 1 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에 50을 가산한다.

○ 초과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이 용 료)

(단위 : 원)

구 분		월 회 원		1회 이용		월 회 원 기준 시간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테 니 스 장		23,000	27,000	2,500	3,000	1일 1회 2시간
배 드 민 턴 장		15,000	15,000	2,000	2,000	1일 1회 2시간
탁 구 장 (신설)		15,000	15,000	2,000	2,000	1일 1회 2시간
수영장	성 인	60,000	60,000	4,000	4,000	1일 1회 1시간
	청 소 년	50,000	50,000	3,500	3,500	
	어 린 이	45,000	45,000	3,000	3,000	
헬스장	성 인	20,000	20,000	3,000	3,000	1일 1회 1시간
	청 소 년	15,000	15,000	2,500	2,500	
	어 린 이	15,000	15,000	2,500	2,500	
다체목육적관	성 인	-	-	4,000	4,000	-
	청 소 년	-	-	3,500	3,500	
	어 린 이	-	-	3,000	3,000	

(공통사항)

○ 이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별도로 징수한다.

○ 관외거주자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에 50을 가산한다.

○ 초과사용시 초과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요금을 징수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각 시설의 1회 이용 시간은 1일 1회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양주국민체육센터에서 2개 종목 이상을 동시 수강하거나 3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 합계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경기도 타 시군 탁구장 및 배드민턴장 이용료 비교

: 양주시는 탁구장과 배드민턴 사용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전용사용료(2시간 기준)

연번	시군	전용사용료(2시간 기준)									
		탁구장					배드민턴장				
		사용기준	평일		토·공휴일		사용기준	평일		토·공휴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우리시(안)		1면 4,000 (32,000)	1면 6,000 (48,000)	1면 6,000 (48,000)	1면 8,000 (64,000)		1면 4,000 (32,000)	1면 6,000 (48,000)	1면 6,000 (48,000)	1면 8,000 (64,000)
	평균		29,440	38,880	43,330	53,470		23,090	30,830	35,350	43,680
1	의정부	2시간	40,000	40,000	50,000	50,000	1면당 2시간	20,000	20,000	30,000	30,000
2	포천시	2시간	20,000	30,000	30,000	40,000	-	-	-	-	-
3	구리시	-	-	-	-	-	2시간	20,000	25,000	30,000	35,000
4	연천군	-	-	-	-	-	1면당 2시간	5,000	7,500	7,500	10,000
5	이천시	2시간	30,000	45,000	45,000	67,500	2시간	30,000	45,000	45,000	67,500
6	수원시	2시간	40,000	60,000	66,660	86,660	2시간	40,000	60,000	66,660	86,660
7	안양시	2시간	36,660	43,330	53,330	56,660	2시간	36,660	43,330	53,330	56,660
8	광주시	1면당 2시간	10,000	15,000	15,000	20,000	1면당 2시간	10,000	15,000	15,000	20,000

- 양주시 실내체육관 기준(8면) 전용사용료가 경기도 평균보다 약 16% 높음
- 경기도 시군 중 탁구장 전용사용료 규정된 시군 : 6개 시군
  · 탁구장과 배드민턴 사용료 동일 시군 : 4개 시군
  · 탁구장이 배드민턴보다 높은 시군 : 1개 시군

※ 개인이용료(2시간 기준)

연번	시군	개인 이용료(1회 2시간 기준)						비고
		탁구장			배드민턴장			
		월회원	1회이용		월회원	1회이용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우리시(안)	15,000	2,000	2,000	15,000	2,000	2,000	
	평균	**25,330**	**1,590**	**1,990**	**25,620**	**1,400**	**1,790**	
1	의정부시	30,000	1,800	2,000	25,000	2,000	2,600	탁구가높음
2	포천시	-	2,000	2,000	-	2,000	2,000	동일
3	구리시	20,000	2,000	2,600	20,000	1,000	1,300	탁구가높음
4	연천군	20,000	1,000	1,500	20,000	1,000	1,500	동일
5	파주시	30,000	2,000	2,000	20,000	1,000	1,500	탁구가높음
6	이천시	20,000	1,000	2,000	20,000	1,000	2,000	동일
7	수원시	25,000	1,000	1,500	30,000	1,500	2,000	배드민턴이 높음
8	의왕시	33,000	2,000	3,000	40,000	1,000	1,000	배드민턴이 높음
9	광명시	30,000	1,500	1,800	30,000	1,500	1,800	동일
10	군포시	20,000	1,000	1,200	-	1,000	1,500	동일
11	안양시	-	1,330	1,330	-	1,330	1,330	동일
12	광주시	-	2,500	3,000	-	2,500	3,000	동일

- 양주시 실내체육관 개인이용료는
  · 월회원 기준 : 경기도 평균의 60%수준
  · 일일사용료 평일 기준 : 경기도 평균보다 25% 높음(토, 공휴일은 동일)
- 경기도 시군 중 탁구장 개인이용료 규정된 시군 : 12개 시군
  · 탁구장과 배드민턴 사용료 동일 시군 : 7개 시군
  · 탁구장이 배드민턴보다 높은 시군 : 3개 시군
  · 배드민턴이 탁구장보다 높은 시군 : 2개 시군

❍ 비용추계 결과

- 2018년 추계시 1년 소요예산

(세출) 체육시설운영(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 30,485천원

(세입) 체육시설 사용료 : 7,541천원

- 2018년 시행 이후 5년간 소요예산 추계

(세출) 체육시설운영(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 1,267,624천원

(세입) 체육시설 사용료 : 380,546천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비고
세입		7,541	90,500	92,310	94,156	96,039	380,546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7,541	90,500	92,310	94,156	96,039	380,546	세외수입
세출		30,485	365,820	282,983	290,365	297,971	1,267,624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0,485	365,820	282,983	290,365	297,971	1,267,624	
자체 수입	소계	30,485	365,820	282,983	290,365	297,971	1,267,624	
	지방세수입	22,944	275,320	190,673	196,209	201,932	887,078	
	세외수입	7,541	90,500	92,310	94,156	96,039	380,546	

❍ 양주실내체육관 2019년 비용예상액

(단위:천원)

구분	기준	산출기초	인원		소요예산
인건비	8급(10호봉)	3,000	3명	12월	108,000
	기간제	1,800	1명	6월	10,800
사무관리비	소모성비품	250		12월	3,000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3,500		12월	42,000
	수도요금	400		12월	4,800
	통신요금	300		12월	3,600
수선유지비	시설보수	500		12월	6,000
위탁관리비	각종 공과금	335		12월	4,020
자산취득비	회원관리프로그램	50,000		1식	50,000
	물품구입비	40,000		1식	40,000
총 합계					**272,220**

○ 옥정체육공원 2019년 비용예상액

(단위:천원)

구분	기준	산출기초	인원		소요예산
인건비	8급(10호봉)	3,000	1명	12월	36,000
	기간제	1,800	1명	10월	18,000
사무관리비	소모성비품	200		12월	2,400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		12월	24,000
	수도요금	200		12월	2,400
	통신요금	200		12월	2,400
위탁관리비	각종 공과금	500		12월	6,000
수선유지비	시설보수	200		12월	2,400
총 합계					**93,600**

○ 신규 체육시설 2019년 예상 수입액 계 : 90,500천원

- 양주실내체육관 : 60,500천원
  - 배드민턴장 : 47,000천원
  - 탁구장 : 13,500천원
- 옥정체육공원 : 30,000천원
  - 축구장 : 30,000천원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양주실내체육관, 옥정체육공원 신설로 사용료 부과 대상 체육시설 추가 및 기존시설인 장흥축구장을 장흥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규 체육시설인 탁구장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금번 조례안에 반영된 탁구장 사용료와 이용료 기준은 배드민턴장 사용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필요함

※ 경기도 시군 중 탁구장 사용료가 규정된 12개 시군 중 탁구장과 배드민턴장 사용료 동일 시군은 7개 시군임

○ 현재 양주시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률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조례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